

[별첨] 지식재산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상표브로커* 협의체 선정 심사표

*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, 등록하여 원 권리자 또는 제 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

- 협의체명 : 접수번호 :
 지원유형 : 지원기업 :
 평가내용

평가항목	평가기준				배점척도	점수
대응 시급성	· 분쟁 현안의 대응 시급성				40 37 34 0 (40점)	
	분쟁 현안	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침해소송대응	해당국 수출기업*의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무단선점대응	해당국 수출예정기업**의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무단선점대응		
	배점	40점	37점	34점		
	* 협의체 전체 참여기업 중 참여기업의 과반수가 상표브로커 해당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** 협의체 전체 참여기업 중 참여기업의 과반수가 상표브로커 해당국에 수출 예정인 경우 · 지재권 분쟁현안 미존재 경우 지원불가(0점)					
공동대응 필요성	· 분쟁현안에 대한 기업 간 공동대응 필요성*				30 27 24 0 (30점)	
	구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	
	배점	30점	27점	24점		
	* 비용절감, 입증효과, 전략·권리공유, 요율절감 등 · 공동대응의 실익이 없는 협의체* 지원불가(0점) * 특정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컨설팅인 경우					
대응파급성	· 협의체 대응이 동종업계에 미치는 파급력				10 8 6 0 (10점)	
	구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	
	배점	10점	8점	6점		
기업협력도	·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참여기업 간 정보공유 및 심층 토의 등 협업 계획* 구체화 정도				10 8 6 0 (10점)	
	* 컨설팅 기간 또는 컨설팅 이후(사후추적 필요시) 협업 계획					
분쟁위험 노출도	· 협의체 참여기업의 분쟁위험 노출 정도				10 8 6 0 (10점)	
	* 기업규모, 지재권 보유 여부, 해당국 수출(예정)여부					
총점(100점)						

지원 적절(80점 이상)
 지원 부적절(80점 미만)
 지원불가

심사의견

심사일자 : 20 . . 심사위원 : (서 명)